

p - 62

12. 법률상 정당행위

03. 해설수정

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

※ 법이 개정되어 폭행은 허용되지 않는다.

p - 69

2. 책임능력 파트

02. 정답수정

(X) 생물학적 요인만 구비하면 된다.

p - 89

12. 장애미수 - 배임 파트

03. 정답수정

(X) 이중매매의 경우 계약금, 중도금을 받았을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.

p - 98

11번 해설수정

~~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본다.

p - 105

11.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파트

02. 해설수정

피고인 甲.丙은 강도치사죄가 성립한다.

p - 123

29번 다음에 지문추가

30. 택시기사를 폭행해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. 13. 9급검찰

p - 139

03. 해설수정

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금고이상의 형을

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는 허용될 수 없다

p - 180

36번 다음에 추가

37. 택시기사를 폭행해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. 13. 9급검찰

p - 189

11번 해설수정

본범과 피해자 사이의 직계혈족인 경우 동거유무를 불문하고 형을 면제한다.

p - 191

5. 절도죄 파트

03. 정답수정

(X)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p - 210

6번을 32페이지 25번 뒤로 이동

7번부터 12번까지 사기죄 파트(207페이지) 45번 뒤로 이동

p - 217

6번 정답 수정

(X) 판례의 변경으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.

p - 221

26번 다음에 추가

27.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식재·관리하여 오던 나무들을 피해자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위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아니하고 무위로 그친 경우,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기수가 아니라 횡령미수에 해당한다 15. 사시

p - 229

42. 배임수재죄 파트

01. 정답수정

(X) 배임죄의 기수이다.

p - 231

44. 배임죄 - 이중매매 파트

05. 해설수정

동산의 이중매매는 해당되지 않는다.

p - 237

52.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- 객체 파트

06. 정답 수정

(X)

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반드시 점유를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

p - 253

10. 정답 수정

(X) 원상태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함으므로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
p - 269

3. 상습도박죄 파트

1. 해설 수정

~~ 상습도박방죄의 죄가 성립한다 ----> 상습도박죄가 성립한다.